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3186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31862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3 선고 2022가단5559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변론종결 2023. 1. 18.

판결선고 2023. 4. 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3. 선고 2022가단555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21. 8. 5. 접수 제7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 1) 원고는 2013. 7. 24. B(이하 ‘채무자’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원금 1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7. 24.부터 2014. 7. 23.까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은 2021. 6. 11.까지 연장되었다.
- 2) 채무자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2013. 7. 29.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무자의 구상금 채무

-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위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연 8%),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2021. 5. 13.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1. 9. 16. 채무자를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108,309,683원(= 원금 106,400,000원 + 1,909,6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1,539,597원(= 지출한 비용 1,645,670원 - 회수된 부분 106,073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위약금 447,740원이다.

다. 피고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자는 2021. 8. 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21. 8. 5. 접수 제76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채무자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173,716원 상당의 경북 고령군 G 임야 317㎡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40,784,683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전 대출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가 2021. 9. 16.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이면서 채무자의 여동생인 I로부터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려는 생각으로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5,119,980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 600만 원은 채무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피고로서는 채무자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전인 2021. 7. 15.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5,119,98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채무자는 피고의 처 I와 남매지간으로서 피고에게는 손위 처남으로서 가까운 친족관계인 점, 피고는 I를 통하여 당시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2021. 8. 5.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I의 J은행계좌에서 1,000,000원짜리 수표 5장, 현금 1,000,000원의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7. 7. 5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내역 외에 위 각 수표와 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채무자가 수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김민지, 판사 안정현

별지